

FIMKO (핀란드)

1. 개요

<p>■ 정의</p>	<p>Fin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 AB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 전기안전 규격, 강제규격 - 전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및 관리업무수행 - FIMKO의 승인취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FIMKO가 실시한 시험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험소 등에서 시험되고 있지 않는 기기의 경우 FIMKO의 형식시험을 받는다. 2) 다른 시험소가 실시한 시험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맺은 시험소에 의한 시험은 인정 : 북유럽 인증서비스 협정, CB 제도, CCA 협정, HAR 협정 - FIMKO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FI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p>■ 주관기관</p>	<p>SGS FIMKO (www.fimko.fi)</p>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기기, 전열기구, 전자기기, 조명기기, 전등공구, 난방기기, 전원코드 및 케이블, 스위치등 - 강제적인 사전시험이 필요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플러그지침(84/539/EEC)에의 적합성이 증명되어 있지 않는 전기의료기기 및 가축용 약품 : 전기에너지 측정기의 지침(76/891/EEC)에의 적합성이 증명되어 있지 않는 전기에너지 측정기 : GATT-TBT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되고 있는 전기기기 및 핀란드 이외의 EEA협정 가맹국 중 어느 쪽 시장에서도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전기기기

■ 인증마크	
■ 적용국가	- 핀란드
■ 적용규격	- FES (Finish Electrical Standard : 핀란드 전기규격)
■ 기타	- 인증신청시 외국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핀란드 현지 대리인을 통하거나, 해외로부터 직접 신청도 가능 - FIMKO의 주요검사 관리업무는 전기시설 검사, 전기원동열 응용 리프트 및 크레인 검사, 전기기기 및 전동력 응용 기기의 안전시험 그리고 전기 콘트랙터 시스템의 관리 등이다.

2. 시험·승인제도

가. 시험·승인수속이 필요한 전기기기

통산성은 주요한 기기에 관해 1994년 1월1일부터 전기 기기의 강제적인 사전승인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몇 개의 제품은 강제적인 사전시험을 아직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가정용 플러그
- 지침(84/539/EEC)에의 적합성이 증명되어 있지 않는 전기 의료기기 및 가축용 약품
- 전기에너지 측정기의 지침(76/891/EEC)에의 적합성이 증명되어 있지 않는 전기에너지 측정기
- GATT-TBT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되고 있는 전기기기 및 핀란드 이외의 EEA협정 가맹국 중 어느 쪽 시장에서도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전기기기

나. 승인 취득의 방법

FIMKO의 승인은 FIMKO가 실시한 시험 또는 다른 시험소가 실시한 시험에 의거,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1) FIMKO가 실시한 시험에 의거

기기가 다른 시험소 등에서 시험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기는 FIMKO 형식시험을 받는다. 국제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형식시험을 받도록 메이커로부터 의뢰하는 케이스가 많고, FIMKO에서는 이러한 메이커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다른 시험소가 실시한 시험에 의거

FIMKO는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많은 시험소와 체결하고 있다. SETI로부터는 다른 시험소에서의 시험결과에 의거하여 핀란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몇 개의 방법이 공표되어 있다. 이들 방법의 표제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 북유럽 인증서비스 협정
- CB 제도
- CCA 협정
- HAR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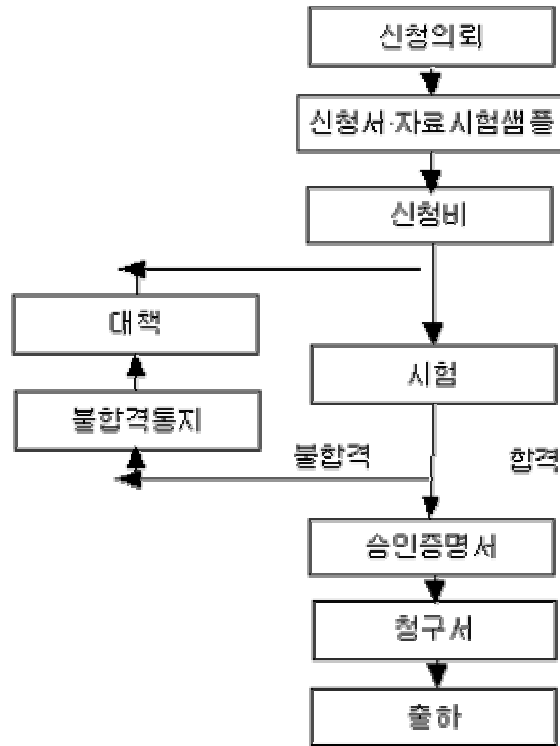
다. 승인 마크

FIMKO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앞에 기술하여 나타낸 FI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3. 신청의 절차

가. 신청 의뢰

FIMKO에의 신청은 이제까지와 같이 핀란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외로부터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에 즈음하여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사용, 또는 그것과 동등의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FIMKO에 제출한다. 그리고 신청서에의 기입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부품을 포함)을 어느 규격에 의거하여 FIMKO의 승인을 취득하고 싶은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승인을 취득한 제품(기본모델)에 유사한 제품(유사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모델과 유사모델과의 차이점, 그리고 기본모델의 승인번호를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모델로서 규정의 시험료가 청구되고 규정의 모든 시험이 실시된다.

나. 비용과 시험소요 기간

FIMKO는 신청자의 핀란드 국내의 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령한 신청서나 샘플자료에 의거하여 신청을 처리한다. 형식시험의 일부에 대해서는 특급업무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급업무제도는 통상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시험 요금보다도 높은 요금이 요구된다. 단, 이 특급업무제도는 모든 분야의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다. 비용·샘플·자료의 제출

FIMKO로부터 송부된 청구서에 의하여 신청의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신청비용에 대해서는 시험의 개시 전에 송부되어 오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험 종료 후에 차액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라. 시험의 실시

필요한 시험 샘플, 기술자료 및 신청비용이 모두 FIMKO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시험의뢰가 접수된다. 동종의 시험품목에 대해서는 접수등록 순번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을 완료하면 시험의 합격/불합격에 불구하고 시험 성적서가 작성된다. 해당하는 요구사항에 기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되고, 불합격으로 된 이유가 시험 성적서에 명확히 기재된다. 메이커는 시험 성적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기기를 개량하여 재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승인 증명서의 발행

FIMKO의 실험에 합격하면, 그 기기에 대해 승인서가 발행된다. 그 승인서를 가진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사용이 허용된다. 단 형식승인이 의무로 되어 있는 제품일지라도 인증마크의 부착 자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바. 요금의 지불

FIMKO에 있어서 시험요금에 대해서는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샘플이 FIMKO에 도착한 시점에서 청구서가 발행된다. 시험요금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이 요금이 지불된 후에 시험이 시작된다. FIMKO도 DEMKO를 제외한 다른 북유럽인증기관과 같은 형태로 승인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료가 요구된다.

4. 시장감시 시험-공장검사와 시장감시

FIMKO의 승인완료 기기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시장감시 시험은 SPOT CHECK로서, FIMKO로의 사전연락 없이 기기의 구조나 표시를 변경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시된다. 시장감시시험 자체는 무료이지만, 승인의 보유자는 시험용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샘플은 시험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것도 있고, 위반이 있으면 승인은 취소된다.